

‘효율적 협상·치밀한 대책’ 세워 부정효과 최소화해야

‘DDA 협상’ 포괄·일반적 골격만 합의, 농업부문 협상 쉽지 않을 듯
‘쌀 협상’ 나라마다 입장 달라 난항 예상, 개도국지위 인정여부 중요

우리 농업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과 쌀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1년 도하각료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던 DDA 농업협상은 지난 8월 1일 협상의 기본골격(Frame)이 확정되었다. 또한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9개국과 양자협상의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쌀 협상은 금년 9월 말까지 타결짓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DDA 농업협상과 쌀 협상은 서로 상이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추진되는 협상이지만 상호 직간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출국 입장 반영, 어려운 협상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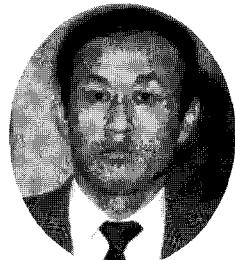
우선 DDA 농업협상은 도하각료회의 이전에 UR 농업협상의 약속에 따라 200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즉 뉴라운드의 출범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었던 농업협상은 도하각료회의의 합의에 따라 DDA의 일환으로 편입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던 것이다. 2003년 9월 칸쿤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그 동안 각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기초로 각료선언문이 작성되었으나, 특히 개도국들이 싱가폴 이슈(투자 자유화, 무역원활화, 경쟁정책 등 4개의제)와 농업부문에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각료회의는 결렬되었다.

이후 다각적인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DDA 협상은 재개되었고 2004년 8월 1일 WTO 회원국들은 협상의 세부원칙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 골격과 방향에 관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출된 합의안은 회원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입장차이로 인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래협상의 과제로 남기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골격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으로 그쳤다. 합의안에 기초하여 금년 말까지 세부원칙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므로 당초 2004년 12월 말까지로 설정되었던 DDA의 협상시한은 자동적으로 늦춰지게 되었다.

농업부문의 경우 이번 합의안은 포괄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수출국들의 입장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어 우리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국내보조금은 물론 관세의 감축에서 소위 조화방식이 채택되어 농업보조가 많거나 관세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폭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국내 농업보조의 경우 무역왜곡 보조의 총액을 이행 초년도에 무조건 20% 감축해야 하며, 품목별 보조액(AMS)도 상한이 설정되어 정책선택의 신축성도 그만큼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가 추곡수매에 사용하고 있는 보조는 품목별 상한이 설정되어 제도의 계속적인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의 생상제한을 조건으로 한 보조, 즉 블루박스의 기준이 완화되어 이를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은 다행이다. 블루박스의 보조상한

을 농업생산의 5%로 설정하고 있어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재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관세감축의 경우 품목별 관세를 높낮이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관세가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감축폭이 커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동일한 그룹 내에서 도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감축의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세를 크게 감축하기 곤란한 민감품목은 국별로 한정된 숫자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나, 관세감축에서 얼마나 신축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반면 시장접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한 관세감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감품목의 대상은 당초 관세할당제도(TRQ)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국한했었으나, 해당국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관세할당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중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한편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별품목(SP)의 경우에도 당초 안과는 달리 시장접근률량(TRQ)을 늘려 나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민감품목과 관련하여 관세상한 제도를 도입

할 것인지의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DDA 협상 타결 지역, 불확실한 상태 진행

한편 쌀 협상은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5(B)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쌀의 경우에는 UR 농업협상에서 합의한 포괄적인 시장개방, 즉 관세화에 대한 예외조치를 부여받아 의무수입물량(MMA)을 설정하고 10년 동안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쌀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였다. 그러나 이행년도가 종료되는 2004년 중에 2005년 이후부터 관세화 예외조치를 계속 적용할지의 여부에 관해 관심국들과 협상을 재개하고 종료하도록 농업협정문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협정문에서는 관세화 유예를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쌀 수출국들에게 추가적으로 의무수입물량(MMA)을 확대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관세화 조치를 스스로 선택할 경우에는 협정문의 지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수준을 계산하고 완전 수입개방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1월 쌀 협상 개시 의사를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9개국이 협상참여 의사를 밝혔다. 최근 국별로 3차 접촉까지를 완료한 쌀 협상에서는 나라마다 상이한 입장을 표출하여 쌀 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호주는 그들의 쌀이 실질적이며 안정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장기적으로 호주 쌀이 한국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쿠터물량의 증량과 수입입찰과 규격 및 시기조정의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 중국과 태국은 무역자유화 원칙을 강조하고, 불가피하게 관세화 유예를 계속 적용할 경우에는 UR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무수입물량과 더 짧은 유예기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쌀 이외의 시장개방 조건을 쌀 협상의 조건과 연계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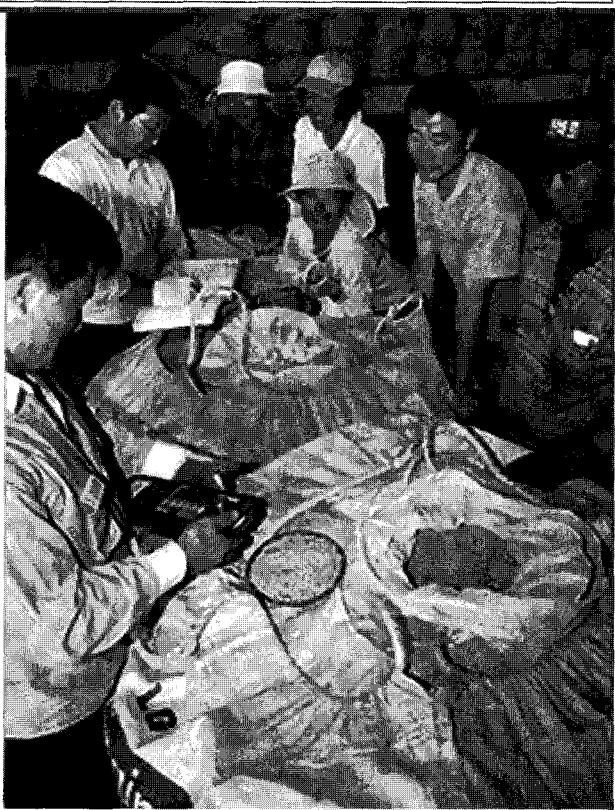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계속 적용하는 관세화 조치를 선택하든 쿠터물량의 확대와 수입관리방식, 그리고 관세감축의 폭 등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에서 합의될 세부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DA 농업협상은 빨라야 2005년 말에 타결될 전망이므로 쌀 협상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DDA 농업협상에 대한 전망이 현실과 다를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수출국들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를 위해 쿠터물량을 양보하고 이를 상대국들이 수용 내지 허락하는 입장이므로 DDA 농업협상 전망과는 상관없이 과도한 수입물량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협상입지는 매우 불리하다. 한편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입장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수출국들이 만족

하는 단일안을 도출하여 협상을 타결짓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대책 수립, 차질 없이 집행해야

이렇듯 쌀 협상은 DDA 농업협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우선적으로는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은 최대한 반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8월의 합의안에서는 단지 협상의 골격과 방향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합의했으므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은 지금서부터 이다. 우선 쌀과 같은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상한이 설정되지 않도록 DDA 농업협상의 논의주제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으며 관세감축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폭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세화 유예의 여부를 떠나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을 것인가의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의무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개도국으로 인정될 경우 최소한의 시장개방의 무관을 져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는 UR 농업협상 이행과정에서 개도국지위를 이용하여 수입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UR 협상의 타결 이후 1997년부터 시작된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농업부문의 경제여건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따라서 1996년 OECD 가입이라는 사실을 떠나 개도국지위를 계속적으로 인정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할 사항은 효율적



인 협상추진과 더불어 치밀하고 빈틈없는 국내대책의 수립으로 수입개방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UR 농업협상 이후 막대한 예산의 투입을 통해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아울러 농업정책도 국제규범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집행되어 추가적인 쌀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외적인 협상에서는 가급적 시장개방의 유예기간을 장기간 확보하고 시장개방의 폭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를 국내적으로 십분 이용하여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등 차질 없는 국내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농악정보**